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은강

전화 033-240-4401

## 보도자료

2022. 5. 20.(금)

### 제 목

## 춘천 의암호 선박전복 6명 사망 사건 수사 결과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상황(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금지정보(제10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2항 제3호)

※ 2022. 5. 20.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기)는, 춘천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과 함께 '20. 8. 6. 춘천 의암호에서 6명이 사망(1명 실종 포함)하고, 2명이 상해를 입은 '의암호 선박전복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 춘천시는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 ①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로 인한 설치예정지 민원제기로 설치 연기 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 ②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공수초섬을 설계와 달리 로프와 돌로 부실하게 고정하여 임시 계류함으로써 장마철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하고,
  - ③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을 방류하여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이어서 고무보트 등 부실한 장비로는 유실 수초섬 고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규명하여,

-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甲, 안전총괄담당관 戊, 수초섬 설치업체 A사 임원 辛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사업주인 춘천시, A사, 현장총괄책임자인 위 甲, 辛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당시 수초섬 유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A사 사장은 불기소 처분

## I 피고인

소속	성명	직책	죄명
춘천시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甲〇〇	교통환경국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乙〇〇	환경정책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丙〇〇	환경정책과장 직무대행	업무상과실치사상
	丁〇〇	환경정책과 유역관리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戊〇〇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상과실치사상
	己〇〇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庚〇〇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팀원	업무상과실치사상
A사	A사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辛〇〇	이사, 현장총괄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II

### 사건 개요

- '20. 6. 춘천시가 A사를 통해 의암호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던 중 춘천시 귀책사유로 공사 중지되어 **임시계류 중이던 인공 수초섬**이 '20. 8. 6. 집중 호우와 댐 방류로 빨라진 유속을 견디지 못하고 **의암댐 방향으로 유실**되자,
- 춘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A사 직원, 경찰 등이 유실되는 수초섬을 고박하기 위해 선박, 보트를 동원하여 의암호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의암댐 수상통제선 부근에서 선박 2척이 전복되어 8명이 사상**한 사고임

※ 춘천시 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1명 실종), A사 직원 1명, 경찰 1명 등 총 6명 사망,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2명 상해

[사고당시 기상상황] ① **600mm 이상의 호우경보 및 강풍주의보 발효**, ② 의암댐 등에서 **초당 10,000톤 이상 방류**, ③ 댐 수문 개도부 **평균 추정 유속 6.7m/s**

[수초섬 크기 등] 수초섬 면적 **2,014㎡**(약 621평, 폭 76m, 길이 65m, 축구장 약 1/3 크기), **6,952kg**의 닻 설치하여 고정 계획이었으나 춘천시 사정으로 고정하지 못한 채 임시계류

[수초섬 유실] 임시계류 시 **8개의 로프를 데크 기둥에 묶고, 콘크리트 블록(약 240kg) 4개씩 2묶음을 로프에 연결하여 호수 바닥에 내려 놓았으나, 로프가 끊어져 수초섬 유실**

※ 고박작업에 환경선과 고무보트(동력 15마력) 3대 등이 동원되었으나, 환경선은 너비 1.85m, 길이 7m, 0.74톤에 불과하여 위 장비로는 수초섬 고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음

## III

### 수사 경과

- '20. 8. 6. 춘천경찰서, 수사 착수
  - '21. 1. 5. 검찰, 보완수사 요구
  - '21. 7. 13. 춘천경찰서, 보완수사결과 등 재송치
  - '21. 8. ~ '22. 4. 검찰 보완 수사 및 피고인 戊 등 일부 피의자 추가 입건
- ※ 검찰 보완수사 결과, 의암호 안전을 총괄하는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이 수초섬 유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밝혀 추가 입건
- '22. 5. 20. 피고인들 불구속 기소

## IV

## 수사 결과

### 1. 검·경·노동청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밝힘

춘천시검과 춘천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본건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①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계약 시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 부실로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 가능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중단시키면서 인공수초섬 임시계류 상황을 발생시키고, ②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한 임시계류를 해 오던 중, ③ 장마철 집중호우 및 댐 방류, 강풍 등으로 위험 상황에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④ 그 과정에서 수초섬이 유실되자 작업 시 사상의 위험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담당 공무원들과 A사 측 책임자가 수초섬 유실에 따른 책임만을 우려하여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임을 밝혀 냄

#### ① 춘천시의 설치장소 검토 부실에 따른 수령지체로 임시계류 상황 발생

- 춘천시에서 A사와 '20. 5.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6. 19.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여름 장마철 전에 고정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계약 당시 설치장소에 대한 검토 부실로 민원이 제기되자, 설치를 연기시키면서 책임 회피를 위해 A사 측에 '장마철·혹서기 작업자 안전'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 A사에서 1차례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 재차 춘천시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A사는 관리책임 부담 및 비용 문제로 거절하고, 이에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사업중지를 결정하고 '20. 7. 30. A사에 통보(중지기간 '20. 10.말까지), 춘천시가 계약에 따른 이행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준공이 지연되어 장마철 집중호우기에 들어섬

※ 계약상 준공일은 '20. 7. 5. 이었으나 설치 예정지가 카누경기장 부근이어서 훈련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춘천시는 민원의 원인이 된 카누 경기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한 이후인 '20. 10.경 설치 예정지를 변경하여 수초섬을 설치하겠다는 방침 결정

## ②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지 못한 부실한 임시계류

- 집중호우 및 댐 방류 등 기상상황에 따라 수초섬에 부유쓰레기가 쌓이는 경우 수초섬이 유속과 무게를 이기지 못 하고 유실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돌로 만든 닻을 사용하고, 로프로 수초섬을 산책로 기둥에 묶어 놓는 방법으로 임시방편적인 불충분한 고정을 하였음

※ A사 측에서 임시계류를 위한 추가 고정 닻 비용으로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자, 춘천시 측에서 비용 추가 지출에 난색을 표명 ⇒ 로프 등을 이용하여 임시 계류

## ③ 집중호우 및 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지시·묵인

- 사고 당일인 8. 6.에는 6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어, 호우경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의암댐 등에서 초당 10,000톤 이상을 방류, 댐 수문 개도부 평균 추정 유속 6.7m/s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 춘천시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음에도, 춘천시는 임시계류 수초섬에 부유쓰레기가 쌓이자 A사 측에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등을 요구하였음

## ④ 수초섬 유실 상황에서의 작업 중단, 대피 조치 부재

- PP로프(인장강도 4.4톤), 나일론 로프(인장강도 3.4톤) 등 로프를 데크 기둥에 묶고, 콘크리트 블록(약 240kg) 4개씩 2묶음을 로프에 연결하여 호수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임시계류한 상태에서, 수초섬이 부유쓰레기 무게 및 유속을 견디지 못하여 유실되었고, 환경선 및 고무보트 3대로 축구장 1/3 크기에 이르는 수초섬을 고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작업이었음에도 춘천시 근로자, A사 근로자 등이 환경선, 고무보트 등에 탑승하여 의암호에서 떠내려가는 수초섬 고박작업을 하게 됨

※ 수상통제선에 걸려 선박이 전복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친 고박 시도 모두 실패하였음

- 결국 호우경보·강풍주의보 발효된 상태이고, 의암댐 등에서 초당 10,000톤 이상 방류하여 유속이 매우 빨라 수상 작업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초섬 유실에 따른 책임만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중지하게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상이 발생한 인재임

##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에 기여

-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산업재해예방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재해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분장 및 대응 훈련이 미비**하여 위기대응에 큰 공백이 있었음
- 이번 수사를 통해, 춘천시는 댐 방류 시 일체의 선박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매뉴얼을 개정('20. 11.)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미비 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음

### V

## 향후 계획

- 춘천지검은 앞으로, 이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경찰, 노동청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